

대구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(제정) 2012-02-29 조례 제 4332호
(일부개정) 2016-10-31 조례 제 4892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여성 및 가족정책을 연구·개발하고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대구여성가족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립) 대구여성가족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은 「민법」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재단의 설립·운영에 관하여는 「민법」등 관계법령에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 2016.10.31.>

제4조(사업)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여성·가족·보육·저출산·아동·청소년·다문화가정 관련 정책개발
2. 양성평등 및 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
3.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사업
4. 여성인력개발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·운영·보급
5. 국내·외 여성교류 및 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
6. 여성·가족관련 기관·단체의 기능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
7. 여성·가족관련 정보의 생산 및 제공
8.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일·가정양립 지원 사업 <신설 2016.10.31.>
9.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대구광역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<개정 2016.10.31.>
10.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<개정 2016.10.31.>

제5조(정관)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1. 목적
2. 명칭
3. 사무소의 소재지
4. 자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
5.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
6.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
7.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
8.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
9. 사업에 관한 사항
10. 기금에 관한 사항
11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12. 해산에 관한 사항
13.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

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대구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6.10.31.>

제6조(임원의 구성)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를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6.10.31.>

[제목개정 2016.10.31.]

제7조(임원의 임명 등) ① 이사장은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으로 한다.

- ② 대표는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,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공개 채용 과정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6.10.31.>
- ③ 이사장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,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연장가능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결정한다. <개정 2016.10.31.>
- ④ 대표는 상근으로 하고,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.
- ⑤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8조(대표 및 임원의 직무) ① 대표는 재단을 대표하며, 업무를 총괄한다.

-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,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.

제9조(이사회)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.

-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.
-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대표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업무전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
제10조(직원)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표가 임명한다.

제11조(재산 및 운영경비)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거나 총당한다.

- 1. 대구광역시의 출연금(양성평등기금 포함) 또는 보조금 <개정 2016.10.31.>
- 2. 여성관련 단체·법인·기관·개인 등 출연재산
- 3. 그 밖의 운영 수익금

제12조(수익사업)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6.10.31.>

제13조(자금의 출연 등)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제14조(사업연도) 재단의 사업연도는 대구광역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15조(사업계획서, 결산서 등의 제출)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6.10.31.>

-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세입·세출결산서를 해당 회계 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0.31.>

제16조(사무의 위탁) 시장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17조(보고·검사·평가)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·회계·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.

- ② 시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경영실적평가와 대표의 성과평가를 실시한다. <신설 2016.10.31.>
-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[제2항에서 이동 <2016.10.31.>]

[제목개정 2016.10.31.]

제18조(운영규정)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정관의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9조(공무원의 파견)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

제20조 삭제 <2016.10.31.>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.

부칙 <개정 2016.10.31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대표의 임기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.